


품목명	내 용	사 진
1. 파렛트 (pallet)	물품의 집하, 겹쌓기, 보관, 하역,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, 물품을 한데 모아서 쌓을 수 있도록 적재면(積載面)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	
2. 안전망	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, 놀이터, 야구연습장, 절벽, 교량,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각종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(PE) 및 폴리프로필렌(PP) 재질의 그물(어망 제외)	
3. 어망	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, 양식어업 및 어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(안전망 제외)	
4. 로프	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,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	
5. 폴리에틸렌 (PE)관	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폴리에틸렌 (PE) 재질(가교화폴리에틸렌(XLPE) 재질을 제외한다)의 모든 관류(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, 폴리에틸렌 (PE)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을 포함한다)	

<p>6. 플라스틱 운반상자</p>	<p>물품의 하역, 보관,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(단프라 박스는 제외한다)</p>	
<p>7. 프로파일 (profile)</p>	<p>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대상으로서, 새시(sash)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(창틀 또는 문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</p>	
<p>8. 폴리염화비닐 (PVC)관</p>	<p>폴리염화비닐(PVC) 재질로 된 다음의 제품 가.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모든 관류 제품 나.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시트·평판 및 몰딩(molding)류 제품[걸레받이, 반경관(半徑管) 등을 포함한다] 다.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시트·평판</p>	
<p>9. 바닥재</p>	<p>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,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(PVC) 재질의 마감재</p>	
<p>10. 건축용 단열재</p>	<p>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,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해 폴리스티렌(PS) 재질의 비드를 발포·성형한 제품</p>	

<p>11. 전력·통신선</p>	<p>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,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전선(電線)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 또는 피복</p>	
<p>12.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</p>	<p>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유지관리(A/S)를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다음의 부속품 가. 범퍼 나. 몰딩(가니쉬를 포함한다) 다. 언더커버 라. 워셔탱크 마. 냉각수탱크</p>	